

강원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315회 정례회(11.1~12.9)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15회 정례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11건

상임 위원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2. 12. 9.)
기획행정 위원회 (1)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희철 의원	원안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3)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수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희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1)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종수 의원	원안가결
경제통상 위원회 (4)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하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현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홍 의원	원안가결
안전건설 위원회 (2)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원안가결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15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2. 12. 9.(금)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희철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2)
- 공동발의 : 이무철 의원(경제통상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취급자가 200명 이상이고, 정보주체가 10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를 둔다.



김희철 의원

이무철 의원

■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1)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강원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강원도 내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심야시간 진료 또는 공휴일 진료를 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발의 : 정재웅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무연고자나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및 7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구성된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이 된다. ③ 도지사가 공영장례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지사는 ③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박관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1)



본 조례의 상위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강원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서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다.

▣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최중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보호수의
지정 및 보호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 ·
군수(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하고, 도지사는 관리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존중하여 보호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 · 허가 등으로 보호수에 인접하여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 · 통신
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및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최중수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엄윤순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홍성기 의원

■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공동발의 : 김기홍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원주3),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강원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 교육 훈련 지원 사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및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임미선 의원



김기홍 의원



박호균 의원

■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기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및 경쟁력 확보·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박대현 의원(경제통상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 공동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최재민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4)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강원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강원도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박대현 의원



김용래 의원



문관현 의원



이지영 의원



전찬성 의원



최재민 의원

▣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박찬흥 의원(경제통상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7)

■ 공동발의 :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재난상황 등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강원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수업무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및 심리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를 두고,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의결한다.



박찬흥 의원



엄윤순 의원

■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임미선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공동발의 : 한창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1),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최승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5)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로에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미선 의원



한창수 의원



양숙희 의원



엄윤순 의원



최승순 의원

■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 :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상 상위 법령이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기 위해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정책위원회를 두고,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사업,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국민의 건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및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